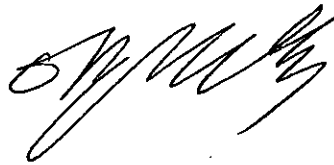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곁으로 한뼘 더!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의 장



2018. 4.



No. 115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원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475)	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상 ‘대중교통중심 역세권’(이하 역세권)의 공간 범위와 관련하여, 당초에는 지하철 역의 승강장 경계로 부터 “250m 이내”의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제한하였으나 이를 “350m 이내”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사업가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. -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거리기준 조정(안 제2조제1호)	이창섭 의원 (찬성 9명) (도시계획관리)	2018. 4.5.
2 (2480)	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‘17.12.29.) 및 시행(2018.4.19.)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 등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 -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명칭 변경(안 제51조) - 시설보호지구 및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·세분하여 관리 (안 제8조의 3, 안 제47조~제49조)	이숙자 의원 (찬성 18명) (도시계획관리)	2018. 4.12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
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